

제조물책임법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김은빈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박사

하충룡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뉴욕주변호사

Study on Proof of Product Liability Act

Eun-Bin Kim^a, Choong-Lyong Ha^b

^a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Pusa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b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Pusa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27 November 2019, Revised 12 December 2019, Accepted 16 December 2019

Abstract

Under the Manufacturing Liability Act, consumers want to be protected from manufacturers by mitigating burden of proof as an important target to be protected. However,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product, it is very difficult for consumers to prove defects from the manufacturing defect. This situation has led to a major revision of the Manufacturing Liability Act, which mitigates the burden of proof of consumers by applying fruitless liability. The Manufacturing Liability Act is comparable to the U.S., which has strong consumer rights and is protected by the Manufacturing Liability Act. The burden of proof can be regarded as the most necessary content for consumers within the manufacturing product liability law when responding to manufacturing defects. The U.S. intend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achieving consumer protection in Korea's Manufacturing Liability Act by imitating the U.S. based on the burden of proof. Case comparison regarding burden of proof can be conducted based on various criteria, including criteria for each product and key features for determining the importance of the manufacturing product liability law. The Act on the Responsibility of Korean Manufacturing Product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was developed based on the assessment criteria, and a remedy was proposed to protect consumers who suffered from manufacturing defects.

Keywords: Product liability, Consumer Protection, the burden of proof, Korea, USA

JEL Classifications: F10, F13

* The article modified for the Ph.D. Thesis of Kim Eun-Bin.

^a First Author, E-mail: ebi8956@naver.com

^b Corresponding Author, E-mail: choongha@pusan.ac.kr

© 2019 The Korea Trad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가족의 건강을 위해 구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죽음의 습기’를 뿜어낼 줄은 몰랐다. 이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한 가정의 이야기이다. 제조물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제조물책임법은 연일 매체의 중심이 되고 있다. 7월 19일을 기준으로 현재 정부에 신청·접수 현황을 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6천 476명이며, 이 중 1천421명은 사망자이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제조물에 의한 손해가 발생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이 2017년 소비자 보호의 목적에 더 명백히 도달하기 위해 일부 개정되어 2018년 4월 19일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중이다.

급격한 시대의 변화가 소비자 중심적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을 넘어 정책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나 여전히 그 요구에 부응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불거질 당시 소비자법에 명시된 목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조물책임법 개정 이루어진 후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라고 불리는 대신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사건인 “라돈 침대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대진 침대는 문제가 된 침대를 리콜 조치하는 것 이외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별도의 보상 계획을 밝히지 않으며 소비자 보호에 있어 제조업자가 취하는 제조물 결함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소비자 보호가 제조물책임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건 외에도 소프트웨어 결함,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에 의해 피해가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은 제조물의 결함이 발생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 기업의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선진국은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을 연구하여 적용하고 있다. Stephen (2016)는 미국은 시장 규모와 소송이 활발한 국가라는 관념으로 제조물책임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미국에서 가

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Widman (2010)은 한국 외에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제조물 안전에 관심이 높아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개정과 관련된 법을 적용하는 사례연구도 있었다.

Chen and Xinyu Hua (2012)는 미국 내에서도 소비자보호와 깊은 연관이 있는 법리인 제조물책임법은 낮은 품질을 가진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이 피해로 인해 소비자의 복지 및 사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이라는 입장을 주장했다. W.Kip Viscusi (2012)는 소비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 가능한 법 여부의 유효성에 대해 - 제조물책임의 역할에 관한 실증적 연구와 사례 연구를 통해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런 명확한 각자의 의견에 불구하고 미국은 다각도에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Ha, Choong-Lyong and Eun-Bin Kim, 2018).의 연구에서 미국은 1906년부터 판례에 의해 제조물책임법이 확립된 후 제조물책임법의 입증책임과정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과정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은 고정된 기준이나 내용이 아닌 당시의 사회 변화 또는 기술의 진보와 소비자의 의식 수준을 반영하여 완성되고, 사회적 트렌드가 빠르게 나타나는 법 분야이다.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던 관행이 개선됨에 따라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정부와 기업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본 논문은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지만 많은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 보호를 우선으로 해야 하며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연구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필요성이 있다.

논문의 구성에 따르면 총 5장으로 1장에서는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2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입증책임이 불법행위법과 제조물책임법을 거치면서 입증의 내용의 변경된 내용에 관해 서술 하고 있으며 3장에서는 한국과 미국 판례를 자동차, 가전제품, 의약품, 생활용품

을 통해 판례를 비교하였다. 4장에서는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상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소비자의 권위가 높은 미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II. 한국과 미국의 입증책임

1. 입증책임의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 이전에 한국의 법리에서는 입증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입증책임의 문제점은 제조물책임법의 내용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기초적으로 계약책임과 과실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민법 체계상 제조물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 2002년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되었다. 현행법은 제조물에서 결함의 발생으로 재산·신체, 생명에 피해를 입고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소비자가 '제조물결함'에 대한 입증내용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도 본 법리에 따라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사례의 통계를 보자면 입법 취지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소비자의 제조물결함에 대한 내용을 입증해야하는 부담이 상당하여 제조물결함에 대한 입증부담이 크고 제조물이 가진 결함내용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함이 어렵다고 여겨진다.

제조물책임법 시행 전에는 주로 제조물책임 관련 소송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판결하였다. 제조물책임법 제정 전 제조물관련 결함사고가 불법행위법을 적용할 때에는 과실주의 원칙으로 결함의 존재여부와 제조자가 발생시킨 과실과 책임의 내용 모두 피해자인 소비자가 입증해야만 했다(Kim, Je-wan, 2005). 민법 제750조를 적용하는 경우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과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이를 입

증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다. 결함 제조물에 의한 사고의 경우 기존의 계약책임의 법리(민법 제 390조 채무불이행책임, 민법 제580조 매도인 하자담보책임)나 불법행위책임의 법리(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경우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현대 사회의 산업기술 발달과 과학기술의 진보로 인해 위험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결함 제조물이 대량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법리로는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공정하게 구제하는데 한계가 발생하였다. 결함을 가진 제조물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는 전통적인 방법인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에 의해 전보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로 인해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경감에 논점을 전개하여 사실상의 추정, 엄격책임 등을 통해 피해자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 전환하는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 입증책임의 전환 · 과실의 추정 · 인과관계의 추정 등에 의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로 경상사료사건은 배합사료와 기존사료를 먹은 닭들이 난소협착증의 질병을 가지게 되어 산란율이 낮아진 사건으로 사료에 원재료 아닌 다른 내용물이 함유됨으로 인해 그 불순물에서 반응이 일어나 그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추정에 따른 사건이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사료에 또 다른 내용물이 함유되었다고 보고, 그 사료를 제공한 제조업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본 사건에서는 추정된 가정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시하여 사실상 추정만으로도 입증능하게 하는 판례로 평가받고 있다.

2016년 미국에서 발생한 디젤게이트사건에서 판시한 폭스바겐의 자동차를 구매한 미국의 소비자들의 피해내용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배상안을 보면, 미국 소비자들은 제조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큰 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연이어 발생되었던 BMW화재사건은 역시 미국에서도 발생하였는데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BMW 140만대에 대한 대규모 리콜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미국에서 제조물책임법은 누적된 판례의 진전에 의하여 형성되고 발전되었다. 결함을 가진 제조물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단은 과실책임으로 시작해서 보증책임을 거쳐 엄격책임으로 발전되었다. 산업혁명이 지난 후 자본주의 경제의 확립과 국가적 필요에 의해 그리고 개인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대 시민법 법리가 지배하고 있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제조업자는 결함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서로 간에 계약관계가 없다면 계약에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을 적용하여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성립되었다. 이후 미국은 다양한 생산품을 대량생산·대량판매·대량소비 함에 있어 소비자를 보호해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리를 적용하였다. 20세기 후반 불법행위, 리스테이트먼트(2th)제402조는 현대 제조물책임법의 근원이 되었지만 1997년 5월 사실상 폐기되었다. 현재 그 자리에는 제조물책임법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리스테이트먼트가 있다. 미국 제조물책임법에서 입증책임이 형성된 과정은 과실책임, 보증책임, 엄격책임 순이다. 미국은 엄격책임을 최초로 적용한 나라로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사건은 엄격책임을 최초로 적용한 판례이다. 이 사건을 통해 미국 이외에 제조물책임법에 관심을 가지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소비자에 관한 문제와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리 형성과 판례에 폭넓은 영향을 미쳤다.

2. 불법행위법에서의 입증책임

불법행위법에서의 입증책임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려고 한다.

우선 한국의 불법행위법의 성립요건은 민법 제750조에 규정되고,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위법하여야 하며,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가해자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과 가

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불법행위책임을 성립에서 인과관계는 일정한 원인이 없었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로 충분하다. 손해배상책임을 성립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문제는 가치판단으로 보기보다는 사실판단의 문제로 보고, 인과관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 내지 성립의 문제인지, 손해배상책임 범위의 문제인지에 대해 구별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에서는 손해 배상책임을 성립 문제와 손해배상책임을 범위 문제를 구별하지 않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손해배상책임 범위문제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문제이며, 책임성립문제로서의 인과관계는 원인과 관계의 결과만 있으면 만족한 것이므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까지 살펴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Ji, Won-rim, 2009; Song, Tuck-Soo, 2008).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불법행위의 적극적 성립요건이므로 그 입증책임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부담한다(Lee, Chang-hyeon, 2011). 이러한 규정에 따라 피해자인 원고가 인과관계에 대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인과관계의 입증이 지극히 어려운 경우 그 입증책임이 있는 피해자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게 된다. 소비자가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게 됨에 따라 피해자의 보호 측면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이 그 입증책임을 상대방에게 전환시키거나 완화시키기도 한다.

불법행위의 적극적 성립요건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들 수 있으며 그 증명책임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의 뒀은 피해자에게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이한 행위임을 증명해야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고의에 의한 입증책임은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거의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 판단한다.

과실의 경우 증명에 있어서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추상적·객관적 과실을 기준으로 그 내용과 위반여부를 판단하며 피해자가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면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일응 추정하게 되고 가해자가 그 추정력을 뒤집기 위해서 오히려 가해자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가해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가해자가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가해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과실을 추정이라고 하고 이를 입증책임의 사실상 전환이라고 한다. 과실의 추정은 과실 책임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가해자가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의 불법행위법에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 엄격책임(무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본 내용에서는 한국과의 비교를 위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은 ①의무(Duty) ②의무위반(Breach of duty) ③사실적 인과관계(Cause in fact) ④법적 인과관계(Proximate cause) ⑤손해(Damage)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는 인과관계(Causation)란 사실적 인과관계와 법적인과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지만, 개념적으로는 관련성이 없다(Luke Meier, 2011).

과실소송에서 원고는 어떠한 손해 또는 피해를 입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의 의무위반이 원고의 손해 내지 피해의 원인이었음에 대한 요건을 입증할 책임을 가진다(Jon Carlson, 2013).

기업의 과실에 의한 행위임이 밝혀지면 소비자는 기업의 과실행위가 자신이 입은 손해발생에 대한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Marc A. Franklin, Robert L. Robin and, Michael D. Green, 2011). 인과관계를 통해 기업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피해와 결과 사이에 어떤 사실적(factual)이고 법적(legal)인 원인이 되어야 하지만 과실에 의한 불

법행위에서 인과관계 성립은 소비자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거의 물리적 내지 과학적 방식(a physical or science way)으로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결과와 피해사이에 사실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소비자에게만 법적인 책임을 부담시킨다면 소비자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되므로 사실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 중에 법적(legal)으로 의미가 있거나 밀접한(proximate)행위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고 법적인과관계로 말할 수 있다(Seo, Chul-won, 2005).

인과관계를 판례를 통해 설명하자면 Perkins v. Texas and New Orleans Ry.Co (Perkins v. Texas and New Orleans Railroad Co., 243 La.829(La. 1962))의 사건에서 기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남편을 잃은 67세의 원고는 문제의 기차가 제한된 속도를 위반했기 때문에 피고인 철도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속도를 위반한 사실이 없더라도(Irrespective of the excessive speed) 치명적인 사고(The fatal accident)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차의 과실과 발생한 손해와는 사실적 인과관계를 갖는 원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3. 결함의 입증책임

불법행위의 입증책임을 거쳐 소비자보호를 위해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증책임이 완화되었다.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되어 법적성격을 무과실책임으로 보는 이상 피해자는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물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수리 경우에도 동일하다. 수리한 제품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에 대한 여부는 제조업자가 아닌 일반인인 소비자도 도저히

Table 1. the burden of proof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urden of proof in Tort Liability		Burden of proof in Product Liability	
K O R E A	Requirement ent in Tort Liability	Requirement in Product Liability	Requirement in Product Liability	Strict liability
	The burden of proof	Consumer	The burden of proof	Consumer :Violent presumption Manufacturer :Suggest other causes
U S A	Requirem ent in Tort Liability	Duty, Breach of duty, Causation, Damage	Requirement in Product Liability	Strict liability
	The burden of proof	Consumer : Damage Manufacturer : Duty of care	The burden of proof	Consumer :Ordinary Channels of Distribu tion

Data Sources : By the author

밝혀내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특수성에 따라 제조물책임에서는 피해자가 간접사실만 증명하면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되므로 제조물의 정상적인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고 증명하여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한다. 제조업자가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반증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제조업자는 결함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대법원의 판례에서 보면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수신되는 상태에서 발화·폭발한 경우에 있어서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업자는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

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 시의 제품의 안전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되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에 맞음을” 판시하고 있다.

소비자의 보호의 목적에 있어서 선도적이었던 미국은 1960년대에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조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엄격책임 법리가 확립되어 2차 리스테이트먼트 402A조에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제조물책임은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주의로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 사람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제조사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다. 판례에 의하면 “제조업자가 제품이 점검되지 않고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시장에 유통 시켰고 신체에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때에는 제조물책임법상 엄격책임을 진다”고 판결하였다(59 Cal. 2d 57, 377 P.2d 897, 27 Cal. Rptr.697(1962)).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에서 피해자인 소비자는 제조물책임을 입증할 때 첫째 제조물에 결함(Defect)이 있으며 둘째 그 결함이 제조사의 손을 떠날 때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Existence of the defect when the product left defendant's control)을 반드시 보여야 한다. 제조물 결함이 제조사의 손을 떠날 때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이기 위해서 소비자는 단지 그 제조물이 보통의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쳤음을(Ordinary Channels of Distribution) 보이기만 하면 되는데 즉 정상적인 매장에서 사기만 했다면 제조물의 결함은 무조건 제조사의 책임이 된다.

Ⅲ. 품목별 한·미 간 판례비교

한국과 미국에 존재하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 판례 들 중 품목별로 한국과 미국 간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 서술해 보려고 한다. 기존의 판례에 여러 종류의 물품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 특히 소비자들과 밀접한 4가지 품목으로 정리하여 한국과 미국의 판례를 비교하려고 한다.

1. 자동차

최근 자동차 관련 사고가 연일 이슈가 되면서 자동차 관련 판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그 판결 내용에 대해 소비자 들이 특히 주목한다. 이전부터 발생했던 자동차 급발진 사건은 사고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재현실험을 하지만 쉽게 재현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가 결함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의 사건1(대법원 2004.03.12. 2003다 16771 판결)은 주차관리원이 승용차를 이동하기 위해 시동을 켜고 자동변속기의 선택레버를 주차에서 전진으로 이동하자 자동차가 갑자기 직진하면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고도 계속 직진하여 다른 주차차량

과 음식점의 벽면을 잇달아 충격한 후 정리하였고 그에 따라 위 자동차 및 음식점 벽의 일부가 파손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자동차는 이전에 내부 부속품에 이상이 생기거나 급발진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사고 후 점검결과에 의하면 차량 부품 등의 이상이 발견된 사실이 없었다. 위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미국과 캐나다 및 일본에서도 유사한 연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보호원이 급발진을 일으키는 자동차의 구조적인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운전자가 엑셀레이터를 작용하지 않았다면 급발진이 발생할 수 없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에 따라 자동차의 엔진제어장치에 원고 주장에 따라 전자파 간섭과 관련된 제조·설계상 결함이 존재한 다거나 앞서 언급한 동일한 결함으로 급발진사고가 발생했음으로 볼 수 없었다. 이러한 사고 경위에 따라 원고가 사고 당시 자동차를 정상적인 사용법에 따라 작동하였지만 제조업자의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동차에 발생된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원고가 결함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본 사건에서 원고는 패소하였다.

한국의 사건 2(서울고등법원 2007.01.12. 선고 2005나45898 판결)는 승합차 베어링과 차축 융합으로 발생한 자동차사고 피해사건으로 원고가 출고한지 3개월 된 승합차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중앙분리대와 부딪혀 사고가 난 사건으로 승합차는 좌측 뒷바퀴 베어링이 용착되어 차축이 부러지면서 좌측 뒷바퀴가 빠져 나간 상태였다. 본 사건의 쟁점은 승합차의 베어링 용착현상이 중앙분리대와의 충돌 이전에 발생된 베어링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운전자 과실(졸음운전)로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다. 원고의 주장은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위 승합차를 제조하고 판매한 피고에게 제조물 책임 등에 기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사고 후 현장 상황, 승합차의 상태 및 중앙분리대와의 충돌상황, 사고 후 차축과 베어

링 주변 부품의 상태, 감정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베어링 부분의 용착 현상은 중앙분리대의 충돌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베어링 부분의 용착 및 차축의 파단이 사고 발생이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제조물 책임에 관한 입증책임 완화의 범리에 따른 증명을 다한 것이며 피고는 달리 사고가 제조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승합차의 베어링 부분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하였다. 위 사건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증책임 완화라는 대법원 판례의 본질을 살려 종래 주로 논의되던 급발진 사고가 아닌 구체적인 부품의 하자로 인한 자동차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한국의 사건3(대법원 2011.10.27. 선고 2010다72045 판결)은 빌라의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주차장 입구로 나와 우회전 후 약 30m가량을 직진하여 빌라 외벽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급발진에 의한 자동차의 결함을 주장하였다. 대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았을 때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매한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와 브레이크 시스템 등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사정 등에 의하면 원고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는 등 운전조작 미숙으로 발생하였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례에서도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고는 제조물 책임법의 근거로 결함여부에 대하여 먼저 판단해야하며 소비자는 수입업자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묻고 제조물책임법상 수입업자는 제조물책임 주체에 해당하므로 결함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미국의 사건1(O'Bryan v. Ford Motor Co., 18 F.Supp.3d 1361, Prod.Liab.Rep. (CCH) O 19,391, 2014.)은 플로리다 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구입한지 1년 된 자동차가 스위치 컨트롤 비활성화 스위치 결함으로 인해 원고의 집이 화재로 손상된 사건이다. 과실 및 엄격책임에 대한 청구로 원고가 제품에 대한 결함을 입증해야하고 결함을 증명하기 위해 제품의 제조업체의 소유를 떠난 후 제조결함이 있음을 증명

하거나 제품 특성에 대해 경고하지 않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원고 측은 차량에 장착된 스피드 컨트롤 비활성화 스위치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는데 대상이 화재의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제품결함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화재당시 자동차에 결함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는 제품이 정상작동 중 발생한 오작동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충분한 사실이 있어야 했지만 이 부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원고 측 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전문가는 화재의 원인이 불확실함에 동의하였고 원고는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제품의 결함에 대해 충분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에 본 판결에서 패소하였다. 원고의 전문가 증인은 화재의 원인이 불확실하다고 증언함에 따라 결함의 대한 불충분한 증거는 원고의 주장에 치명적이었다.

미국의 사건2(Casey v. Toyota Motor Engineering & Mfg. North America, Inc., 770 F.3d 322, Prod.Liab.Rep.(CCH)P 19, 492, 2014.)은 원고는 의도치 않게 빠른 속도로 주행하던 중 차량이 콘크리트 수로를 밟아 2-3바퀴를 구르게 되었고 사망자는 측면 창문을 통해 부분적으로 빠져나오던 중 그녀의 머리는 차 밑에 깔리게 되었고 사망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며 동승했던 아이들은 무사하였다. 차량의 사이드커튼 에어백의 결함으로 원고가 사고로부터 보호되지 못한 사건으로 제조물 설계결함을 제기하였다. 원고 측에서는 제동 및 에어백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원고는 사이드커튼 에어백이 제조상 결함이 있거나 대체설계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차량에 장착된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다른 차량에서는 차량이 전복되는 동안 다르게 작동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여 원고가 패소하게 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에어백에 대한 안전한 대체설계가 없었으며 차량의 사이드 커튼 에어백에 대체 천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한 이점과 결과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증거는 없었고 소비자의 차량의 사

이드 커튼 에어백에 대체 천의 사용이 기술적으로 가능함을 확인하지 않았다.

미국의 사건3(Lassen v. Nissan North America, Inc. 211 F.Supp.3d 1267, 2016.)은 자동꺼짐기능이 없는 키리스(keyless)접합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관련하여 6곳의 오토메이커를 상대로 한 소비자 사기 집단 소송이다. 차량관련전문가는 자사 차량의 자동 꺼짐 기능이 없는 것은 자동차회사가 판매 전에 설계결함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전문가들도 자동꺼짐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판매 전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자동차 회사의 사기를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 있어 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여 혐의로 인정되어 차량을 제조한 업체에 유죄등급의 조치를 취했다. 본 사건은 집단소송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집단 소송을 통해 소비자가 승소한 사건으로 집단소송이 소비자를 보호함에 있어 긍정적인 제도임을 보이는 사례일 수 있다.

자동차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자동차라는 물품은 일반 소비자가 입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제조되다보니 판례분석에 있어 원가가 패소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언급된 판례들 중 한국의 판례의 경우 사고의 원인으로 자동차의 결함이 사고 직전에 일어나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의 경우 원고가 승소하였지만, 그 외에 판례들에서는 원고의 입증내용 부족이나 원고의 운전미숙으로 판결된 사건들이 대부분이었다. 미국의 판례에서도 피고의 통제권이나 소유를 벗어난 후 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에 의해 발생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뒷받침 하지 못하여 패소하였고 동일차량에서 같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입증부족으로 패소한 사건도 존재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품설계의 결함으로 인해 책임에 대해 소비자기대테스트에서 일반 소비자가 의도하거나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 원래의 사용법과 같이 작동하지 못하면 설계상의 결함임을 인정하고 적용에 따라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소비자보호법 등을 통해 유죄등급의 조치를 취함을 보았다.

자동차는 복잡한 제조물로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 어렵지만 명백한 입증내용이 존재하면 한국과 미국 모두 원고인 소비자가 승소할 수 있게 입증내용이 완화되었다. 하지만 나아가 미국의 경우 결함이 입증되면 제조업체가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조치내용이 한국보자 제제가 강력하여 제조물의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권리가 더 높고 제조물의 완성도가 높았다.

2. 가전제품

가전제품은 소비자의 생활에 가장 가까운 품목으로 한국의 판례에서는 김치냉장고, 냉장고, 전기난로 등을 품목에 관해 알아보고 미국의 경우 텔레비전과 냉장고에 관한 판례를 가 있었다. 이중 한국과 미국 두 국가에 공통된 품목인 냉장고 사례를 통해 비교한다.

한국의 사건1(서울고등법원 2015.06.04. 선고 2013나20233677 판결)은 원고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냉장고의 과부하 보호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원고의 작물이 전부 소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냉장고를 제조하고 판매자로서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조물책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조업체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로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책임을 물으려면 이 사건의 냉장고가 2002년 7월 1일 이후에 공급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었다. 정상적인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비닐하우스에서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용법에서 벗어난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만약 비닐하우스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면 제조자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고지하여야 하지만 이를 피고는 고지하거나 경고하지 않았기에 이를 원고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10년 이

상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원고 측의 과실이나 책임제한사유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두고 정상적인 용법을 벗어난 사용으로서 피고의 책임 자체를 면하게 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웠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하였고 10년이상 사용하였지만 정상적인 용법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승소하였다.

미국의 사건2(Russell v. Whirlpool Corp. 702 F.3d 450, 2012.)은 화재로 인해 집이 파괴되었다. 이 화재의 원인이 월풀이 설계, 제조 및 판매를 한 결함이 있는 냉장고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상황을 증거로 보고 냉장고가 제조자의 통제를 벗어날 때 결함을 포함한다는 배심원의 내용으로 증거를 뒷받침하는데 충분했고, 그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원고의 집이 파괴되었다. 전문가의 증언에 따라 냉장고의 결함이 인정되고 원고는 화재 발생 전날 냉장고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증언에 따라 본 사건에서는 냉장고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되었음이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했다.

두 나라의 가전제품 중 공통적인 물품인 냉장고를 통해 일어난 사건을 통해 비교를 해 보았을 때 한국과 미국의 두 사례에서 있어서 원고인 소비자가 승소하였다. 입증내용으로 상황적 증거와 내구연안이 지났지만 냉장고의 결함을 인정하였고 소비자의 증언과 전문가의 증언이 일치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다. 가전제품에서는 소비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3. 의약품

한국의 사건1(대법원 2008.02.28. 선고 2007다52287 판결)은 A씨는 여성으로 사망당시 약 41세로 저녁에 감기약으로 콘택600 1정을 복용하였는데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긴급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였다. A씨와 편과 자녀는 콘택600 제약회사를 상대로 하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설명·경고를 하거나 대체의약품을 제조할 의무

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조물책임법에서 의약품은 통상 합성화학물질로서 인간의 신체 내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질병을 치유하는 작용을 하는 정상적인 제조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신체에 유해한 부작용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콘택600에 함유된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라민(Phenylprophanolamine) 감기약을 복용한 사람이 사망한 사안에서 그 제조 및 공급 당시의 페닐프로판올라민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결과와 기술 수준 및 경제성 등에 비추어 위 감기약을 복용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할 정도의 설계상의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표시상의 결함에 대해서도 콘택600의 사용설명서에서 부작용으로 출혈성 뇌졸중이 표시되어 있고 그 병력이 있는 환자 등에게 투여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추어 위 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이 없다고 보았다. 논의될 부분으로 약품에 동봉된 사용설명서의 기재내용과 글씨의 크기 등에 대한 기준이 약사법에 고지된 내용으로 피고인 유한양행은 법적인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겠지만 이는 법리에 의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를 준수했다는 점에서 결함이 없음을 주장할 순 없다. 따라서 콘택600의 표시가 소비자에게 유효하며 적절한 표시인지, 경고의 효능을 잘 나타내는 표시인지, 지시나 경고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 고려가 부족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사건1(Rheinfrank v. Abbott Laboratories, Inc. 119 F.Supp.3d 749, 2015.)은 원고는 어릴 적부터 간질을 앓고 있었다. 유아기부터 5살까지 발작을 경험하고 5살부터 14살까지는 발작이 없었으나 14살부터 다시 발작을 시작했다. 그녀의 발작치료를 위해 두 가지 항경련제를 처방받았다. 원고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인 임신기간 동안에 계속 약을 복용했다. 아기가 태어났고 선천성 기형, 안면이형, 인지장애, 발달 지연 진단을 받았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아이

의 장애가 임신 중 약을 복용한 탓으로 돌렸다.

원고는 딸의 선천적인 결함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임신 중 항경련제(AED)노출로 인해 발달지연에 대해 경고하지 않음으로써 제조물 책임을 위반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있어 제조업체가 이를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본 사건에서 경고결함은 인정하였지만 원고가 제시한 의약품에 의한 아이의 장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의약품에 관한 소송은 제품의 특성으로 소비자가 더욱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한국의 판례를 보면 원고가 패소하였는데,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는 사건으로 보인다. 명시된 부분에서는 제품상의 결함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의약품이라는 소비자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 있어서는 추가 규정이 존재하여야 함을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의약품은 동일한 성분을 가진 의약품을 섭취한 다른 사건이 존재여부로 사건의 판결을 결정하였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품이므로 안전성에 대해 경고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무조건적 제조업자인 피고의 책임으로 판결되었다.

4. 생활용품

한국의 사건1(서울동부지방법원 2011.04.06. 선고 2010가합16944 판결)은 자전거안장을 고정하는 핀의 결함에 대한 내용으로 자전거 수입·판매회사인 피고의 회사가 수입하고 판매한 자전거를 구매하여 타던 중 자전거 안장을 고정하는 안장핀이 부러져 안장이 시계방향으로 돌아가 바닥에 떨어져 도로위로 넘어져 약 10주 동안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원위부장골 외측과 골절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에서 자전거 안장핀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의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수입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을 오로지 원고의 부주의인 운전미숙과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자전거가 쾅

아이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의 변론에서 첫째, 원고는 어려서부터 자전거를 타왔고 자전거를 이용해 꾸준히 출퇴근을 해왔던 점 둘째, 사건 발생 일시 봄 아침 10시로 날씨가 맑았던 점, 셋째, 사건 발생지점은 내리막길이나 평탄한 도로로서 도로상에 주행에 방해되는 물체가 있었다고 불만한 사정도 없다는 점에 따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사건발생장소가 지하차도로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장소였던 점, 원고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등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해야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책임을 20%,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미국의 사건1(Varazo v. Keiser Corporation WL 6266474, 2018.)은 원고는 피고가 제작한 자전거를 옮기다가 손가락을 다쳤다. 결함이 있는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고소하였다. 소비자인 원고는 제조결함과 설계결함을 주장하였지만 손가락 부상은 결함이 있는 자전거와 동일한 제품에서 적절하게 제조된 자전거와 비교하여 다른 점이 없으므로 제조결함이 인정되지 않고 소비자는 제조결함에 대해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설계결함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손가락 부상을 입힌 자전거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비자는 제조사에 대한 제품책임주장을 우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손가락부상은 자전거의 제조결함이 아니며 설계결함이 없다고 판결했다.

생활용품 중에서 자전거의 사례를 비교해 보았다. 한국과 미국의 판례에서 한국은 입증내용을 사고가 난 시점의 상황에 맞추었다. 원고의 자전거 실력, 사고가 난 시간의 날씨, 도로의 상황을 통해 원고는 자전거에 제조결함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제조업자인 피고는 사건 발생 장소가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장소였던 점, 원고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등 사고의 전체적인 상황에서 사건을 바라보았지만, 미국의 사례에서는 동일한 제품의 자전거에서 소비자의 손가락 부상이 있는 지를 판단하여

판결하였는데 자전거인 물품 자체로서 사건을 바라보았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에서 같은 물품이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

IV. 소비자보호를 위한 한국 제조물책임법상 법적과제

1. 한국 제조물책임법 상의 문제점

1) 엄격책임의 엄격성

한국과 미국은 제조물에 결함을 입증하는 데 있어 엄격책임을 적용하고 있다. 엄격책임에는 두 가지 법리가 작용하는데 첫째, 무과실책임으로 제조업자의 과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제품 결함의 자체에만 책임을 진다. 둘째,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소비자는 제품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제조업자는 제조물에 발생된 결함이 제조사에서 발생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 결함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Yoon, Hye-Jin, 2015).

한국의 엄격책임에서 엄격성의 정도는 미국에 비해 약하다. 무과실책임과 명확한 손해배상규정은 있지만 제조업자의 측면에서 면책사유를 두고 그 적용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은 DES사건을 통해 제조물 엄격책임의 개념을 확장하여 더 엄격성을 부과하는 기준인 '제조물 절대 책임(Absolute product liability)'을 수립했다. 제조물 절대책임에 의해 제조업자가 만든 제품의 위험성을 제조 당시 발견 가능한 기술이 아니었다하더라도 이후에 결함이 발견되면 그 결함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진다. 이외에도 미국에서는 제조물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만 제조자가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엄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따라 Rylands v. Fletcher(Rylands v. Fletcher L.R. 3 H.L. 330(1868).)에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제조물에 대해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엄격책임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John L. Diamond, 1989) 고위험 행위이론(The Ultrahazardous

Activity Theory)이 주장되었다. 제2차 리스태이트먼트에서 고위험행위에 대해서도 엄격책임을 제공하여 범위를 확장했다(Restatement of Torts §§ 519~520).

2) 소비자구제방법

한국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된 후 구제와 분쟁 해결 촉진에 있어 한국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었다. 제정 전에는 소비자가 직접 결함을 입증하고 제조자는 과실해명에만 책임이 있고 피해자들은 개별로 대응함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시행 이후 소비자 단체소송과 제조물피해에 대한 접수가 증가하고 소비자 집단소송이 도입되었다.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 제조물 책임관련 증거에 따라 한국 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문제에 관한 피해처리를 위해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 상의 절차로 14개 품목 분야에서 제조물책임센터를 설치 후 운영하여 분쟁조정 기구를 두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구제 방법을 비교하면 미국의 구제과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면 미국 소비자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미국이 타 국가에 비해 월등하게 활용되는 분쟁해결제도인 소비자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제도도 단체소송이나 고액이 될 확률이 높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소송에 의해 진행될 경우 배상액등이 예상보다 커질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다. 1998년 미국의 연방 ADR법은 각 연방지방법원에 하나 이상의 ADR을 갖추도록 요구했고 법원과 연계된 ADR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이다(Maeng, Soo-seok, and Eun-kyung Kim, 2017). 대다수의 지방법원에서는 한 곳 이상의 ADR이 운용되고 ADR을 통할하는 관청이 갖춰져 있다(Yoo, Byung-hyun, 2009). 정부에서도 ADR을 적극활용하고(Daniel Marcus and, Jeffrey M. Senger, 2001) 사회에서도 개인소유의 ADR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Jack M. Sabatino, 1998)교육에서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Frank E. A. Sander, 2000; Tricia S. Johns, 2004). 소비자분쟁해결제도에서 미국 ADR제도 는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작용하

고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동기부터 교육을 통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국가의 체제하에서 각 지역에서도 분쟁해결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3) 결함입증가능성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으로 인해 입증책임 전환은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면 입증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한국의 경우 이전 관례에서는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야기되어 왔다고 추정했다. 대다수의 제조물의 복합적인 기술을 통해 만들어지므로 관련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여부를 입증해야 함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매우 힘든 점임을 고려하여 개정하였다.

미국도 한국과 같이 결함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소비자인 원고 측에 있다. 미국은 소비자가 그 제조물을 사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함과 그 사용법과 같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에 대한 결함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구입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이 증명된다.

4) 소비자소송접근성

한국과 미국 두 국가에서 집단소송제도를 소비자에게 접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입증책임을 기업이 지게 되므로 기업에서 입증을 해야한다. 배상금 부분에서도 한국은 소송당사자에게만 배상금만 청구되지만 미국은 집단소송으로 동일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배상금을 대표로 청구할 수 있다. 소송제도만을 통해 보면 한국과 미국은 동일한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 소비자 사건의 집단소송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집단소송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소송을 접근함이 쉬운 미국을 통해 한국의 집단소송제도도 소비자문제에 파고들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

면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큰 몫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집단소송이 가능해진 후 소비자문제 부분에서 집단소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 한국 제조물책임법 상의 개선방안

1) 엄격책임 강화

엄격책임의 엄격성을 강화하면서 제조자와 수입업자는 생산하고 유통시킨 불완전한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종전보다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불완전한 제품의 생산과 유통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제제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엄격책임의 적용은 한국의 적용범위 비해 범위가 넓고 깊으며 엄격성이 강하다. 미국은 제조물 절대책임이론을 통해 제조업자가 제조 당시 상황에서 결함을 알수 없다 하더라도 이후에 제조물에 결함이 발견되어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제조자가 손해배상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이론이 적용되고 위험한 제조물이 제조됨에 따라 초 위험행위이론을 통해 항상 위험함을 내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엄격책임 적용범위를 확대시켰다. 미국의 사례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의 엄격성은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완성도가 높은 제조물을 만들어 소비자가 제품에 의해 피해를 겪는 사례가 점차 적어져야한다.

엄격성이 강해지면 기업은 결함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제품의 원가의 상승, 제조물책임소송에 다른 부담비용 증가 등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을 유도하여 기업의 해외 시장 적응력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 소비자구제제도 보완

한국은 미국이 비해 소비자가 분쟁해결에 있어 구제방법이 상당히 한정적이다. 이러한 한계점 보완을 위해 한국의 학계에서도 ADR관련 연구는 10년 넘게 하고 연구결과는 이미 많이

축적되어 있다. 미국의 선진 ADR시스템에 관한 연구도 이미 진행되어 왔다. 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ADR이용을 촉진하고 재판절차와 연계하기 위한 ADR법 제정 및 운영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러한 구조를 갖추었고 교육과정에 ADR제도를 포함시키면서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을 정부가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한국도 여러 가지 사건에서 소비자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하루 빨리 ADR기본법을 제정하여 조정 및 기타 ADR기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비자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여 정보의 비대칭에서 차별받지 않고 결함을 가진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와 제조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3) 입증내용간소화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입증책임이 완화됨을 나타내지만 미국에 비해 한국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입증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입증내용을 보자면 제조물 책임법 개정 전의 내용이 적용되어 가습기 살균제를 산 영수증,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발병된 질병에 따라 무슨 약을 복용했는지, CT촬영 등의 정밀 검진을 받았는지 그 질병들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일일이 증거로 제출하여 그 증거가 인정되어야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되어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한국에서 소비자의 입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정보 비대칭에 놓여있는 소비자가 입증하기 힘든 내용보다는 소비자에 초점에서 사실을 입증하면 입증가능성 높아지고 판결에서 소비자가 승소하는 판례를 더 많이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결함 및 인과관계의 추정은 대단히 어렵고 곤란한 과정이기 때문에 소비자와 제조자의 공

평을 추구해야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정책적 문제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리에서 나오는 부당한 대우는 전술한 사실상 추정 등의 소송 기술적 방법으로 일정부분은 해결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완벽한 해결은 법 개정을 통해 미국의 리스테이트먼트에서 언급되는 '정상적인 사용방법으로 사용'을 입증하면 소비자는 입증책임을 다한 것이다. 위 내용을 증명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구입하였다는 내용만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다할 수 있다. 한국이 미국의 간소화된 입증 규정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집단소송 도입 및 활성화

현대 고도산업화의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 생활에서 오는 소비자피해 등에서 다수의 동일 소송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다수의 집단소송이 필요함에 따라 외국에서는 이미 많은 국가들이 집단소송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함과 달리 한국은 제조물 관련 집단소송이 1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고 1960-1970년대의 소비자와 관계된 입법은 소비자의 소송권을 점차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원고가 되어 소비자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도 점차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약관의 규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위한 사법적 구제제도를 발전시켰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소비자가 소송을 접근함에 있어서 뒤처지는 내용들이 많다. 하지만 미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장점을 보고 최근에는 하나씩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소비자 소송이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승소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는 길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V. 결론

제품책임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고도로 발달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 공업국 현재 세계 무역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 책임의 하나인 상의 국가가 관련된 사례가 급증할 것이다. 상품의 특성이나 제조문제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문제는 최근 들어 이슈가 되었지만 이전부터 소비자들은 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소비자문제는 1960년대 이후 매우 자주 발생하고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소비자문제가 소비자의 이익(Consumer's interest)을 침해하는 문제라 할 때 소비자정책인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 관점에서 그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소비자의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점에서 연구의 독립성과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가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의 기본 전제는 미국의 제조물책임법과 판례를 통하여 소비자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용어는 제조물책임법 상의“소비자”이다. 소비자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1987년부터 2007년 소비자 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소비자의 개념이 계속되어 변경되고 있다. 소비자의 정의는 통일적인 규정이 없고 개별 법률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소비자의 개념이 등장한 지 40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소비자의 개념은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에 따라 소비자가 주는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이슈가 짧은 시간동안에만 주목되었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 단 시간의 이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기업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피해의 진상규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권리의 확대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을 비교하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연구한 결과 한국의 법제는 아직 미흡하나 그동안 한국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금씩 제조물책임법이 특별법으로 생기고 개정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제조물결함과 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제조물책임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소비지향사회로 변화하면서 소비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으면 그에 따른 제조물책임법의 연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본 논문에서도 연구하였지만,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한 판례가 미국에 비해 현저히 적어 일부의 판례를 통해 미국과 비교함에 따라 물품별로의 판례를 좀 더 구체적인 비교가 어려웠고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아직은 초기단계로서 소비자 보호를 측면에서 더 촘촘히 내용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미국과의 비교를 단적으로만 살펴보면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의 세부내용과 소비자보호라는 목적부분에서 부족해보이지만 법 개정 후 시행됨에 따라 이후의 판결의 내용에서는 소비자가 승소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다. 계속하여 커지는 소비시장 안에서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보호의 목적에 적절하게 개정되었을 때 더욱 소비자를 간소화된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있는지를 모색해 보는 것이 중요한 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References

- Amy widman (2010), "Advancing Federalism Concerns in Administrative Law Through a Revitalization of State Enforcement Powers: A Case Study of the Consumer Product Safety and Improvement Act of 2008", *Yale Law & Policy Review*, 29, 165-215.
- Chen, Young-min and Xinyu Hua (2012), "Ex ante Investment, Ex post Remedy, and Product Liability",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53(3), 845-866.
- Daniel Marcus and Jeffrey M. Senger (2001), "ADR and the Federal Government", *Missouri Law Review*, 66, 709-713.
- FEA Sander (2000), "The Future of ADR-The Earl F. Nelson Memorial Lecture ",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3, 3-10.
- Ha, Choong-lyong and Eun-bin Kim (2018), "A comparative Study on the Burden of proof between Korea and the USA under the Product Liability", *Korea Trade Review*, 43(3), 101-124.
- Jack M. Sabatino (1998), "ADR as Litigation Lite: Procedural and Evidentiary Norms Embedded within Alternative Dispute Resouation", *Emory Law Journal*, 47, 1289-1301.
- Ji, Won-rim (2009), Civil law instruction, Korea: HongMoonsa, 1623
- Jon Carlson (2013), "Tort Law of the United States -Elements, Principles and Cases-", Korea, jinwon, 128.
- John L. Diamond (1989), "Eliminating the "Defect" in Desing Strict products Liability Theory", *The hastinh law journal*, 34, 529-549.
- Jones, Tricia S (2004),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 The field, the findings, and the future", . " *Conflict Resol. Q*, 22, 233.
- Kim, Je-wan (2005) ,"Design Defects and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in Korean Product Liability Law",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54(4), 22.
- Lee, Chang-hyeon (2011),Tort law, seoul :euro, 39.
- Luke Meier (2011), "Using Tort Law to Understand the Causation Prong of Standing", *Fordhamla w review*, 80, 1246-1247.
- Maeng, Soo-seok and Eun-kyung Kim (2017), "Legal Issues of Product Liability and Consumer Protection Systems ", *Korea consumer law association*, 3(2), 103-113.
- MARC A. FRANKLIN, ROBERT L. RABIN & MICHAEL D. GREEN, TORT LAW AND ALTERNATIVES: CASES AND MATERIALS (9th ed. 2011).
- Park, Kyu-yong (2017), "A duty of caution as a criterion of culpability in the illegal act.", *Law & Policy Institute*, 9(2),106.
- Song, Tuck-soo (2008), The New Civil Law, Korea: ParkyoungSa, 1339.
- Stephen S. Wu (2016), "Product Liability Issues in the U.S. and Associated Risk Management", *Autonomous Driving. Springer*, 554.
- Thomas J. Kniesner, W. Kip Viscusi, Christopher Woock and James P. Ziliak (2012), "The Value of a Statistical Life: Evidence from Panel Data ",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87.
- Yoo, Byung-hyun (2009), "Current Statu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DR) in U.S.A. and Its Introduction", *Korean Association Of The Law Of Civil Procedure*, 13(1), 493.
- Yoon, Hye-jin (2015), "Justification for Strict Product Liability",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135,335.